



민법·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소송장 받은 후 답변서 제출 시기와 내용은

〈문〉 저는 어제 어느 낯선 사람으로부터 「Summons」와 「Complaint」라는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법원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제가 서류를 전달받기 20일전에 법원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Summons」를 대충 보니 30일 이내로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데 언제까지 제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요. 또 「Complaint」내용을 읽어보니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요?

〈답〉 귀하는 「Summons」와 「Complaint」를 전달받으신 날짜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고 상대방에게도 우편으로 전달하셔야합니다. 귀하께서 소송장의 고소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Complaint」에 응답하시는데 실패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Default」로 처리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요구하는 판결문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답변서에 「Complaint」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시거나 혹은 방어하셔야하며 30일 내에 제출·전달하셔야 하겠습니까.

문 수입이 줄었는데 자녀 양육비도 줄일 수 있나

〈문〉 저는 한번 이혼을 하였고 지난 3년간 전처가 아이를 맡아 키워왔으며 저는 이혼판결문에 따라 양육비를 매달 500달러씩 내왔습니다. 저는 2년전에 재혼해 자식을 하나 더 두게 되었고 현재 아내가 정주부로서 아이만 키우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이혼판결문에 따른 양육비를 혼자서 감당해내느라 힘이 들던 중 실상가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LA현지 한국회사가 본국의 IMF사태로 인해 임금을 당분간 감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매달 500달러씩 양육비를 계속 내기가 불가능한데 양육비의 재조정이 가능한지요.

〈답〉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시 자녀양육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이나 최종 판결은 양쪽 부모의 경제적 혹은 재정적 상황에

주요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의 현재 수입이 3년전 자녀양육비가 500달러로 책정되었을 당시의 수입 보다 줄었다는 사실과 재혼으로 인해 새로 법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본인의 경제적 혹은 재정적 상황에 주요 변동이 생겼다고 주장하십시오. 자녀양육비의 수정명령을 해당 가정법원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이래로 현재까지 전처의 경제적 혹은 재정적 상황에 주요한 변동이 없을 경우 자녀 양육비의 수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단,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수정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현재 양육비 500달러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 모르는 사이에 이혼판결문이 결정났다는데

〈문〉 저는 일년전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아내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거주하는 주소도 알려주었고 아이들도 제가 사는 곳으로 데려오곤 하였습니다. 일주일전에 저는 법원으로부터 저희 부부의 이혼이 완결되어 판결문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알아보니 아내가 8개월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얼마전 최종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자녀양육비와 배우자 생계보조비를 매달 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귀하는 부인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송장(Summons)과 이혼신청서(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를 본인이 직접 혹은 우편으로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원이 내린 이혼판결문을 취하시키고 부인의 이혼신청서에 대응하는 「Response」를 법원에 제출하여 다시 이혼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셔야합니다.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Notice of Entry of Judgment」로 사료되며 법원이

이미 내린 이혼판결문을 취하시키고 다시 새로운 이혼소송 절차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귀하가 그 서류를 받으신 날로부터 180일내에 법원에 제출되고 부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혼소송장과 신청서의 전달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부주의로 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그러한 서류를 전달받으신 적이 없을 경우 귀하는 이혼판결문의 취하명령을 무난히 받으실

리라 보며 앞으로 이혼과정에서 자녀양육비와 배우자 생계보조비도 법과 사실에 입각해 재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서 면담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낱동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집보 내 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

부동산 용자



PETER PARK
B.P (213)530-6800

12년 동안 정직과 신용으로 고객을 모셔왔습니다. 오랜경험으로 어떤 문제도 도와드립니다.

- ▶ Commercial 용자 Up to 50 Million
- ▶ 세금보고, 잔고증명 필요없음
- ▶ Cash Out, Equity Loan
- ▶ 3% Down ▶ F·H·A Loan

★ Agent 구원 용자Broker 문의명령
회사 (213)933-1558

